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0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		세 입 · 세 출 예 산 총 액	일 시 차 입 한 도 액
총 계			179,373,760	5,381,213
1. 일 반 회 계			168,383,603	5,051,508
2. 특 별 회 계			10,990,157	329,705
기 타	(1) 상 수 도 사 업	특 별 회 계	1,267,173	38,015
	(2) 하 수 도 사 업	특 별 회 계	54,000	1,620
	(3) 수 질 개 선	특 별 회 계	4,710,099	141,303
	(4) 의 료 급 여	특 별 회 계	136,900	4,107
	(5)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	특 별 회 계	568,580	17,057
	(6) 주 택 사 업	특 별 회 계	544,867	16,346
	(7) 발 전 소 주 변 지 원 사 업	특 별 회 계	334,140	10,024
	(8) 괴 산 청 결 고 추 상 설 직 판 장	특 별 회 계	520,000	15,600
	(9) 농 공 단 지 관 리	특 별 회 계	212,000	6,360
	(10) 주 차 장 운 영	특 별 회 계	180,723	5,422
	(11) 미 집 행 도 시 계 획 시 설 보 상	특 별 회 계	2,321,675	69,650
	(12) 기 반 시 설	특 별 회 계	140,000	4,200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 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708,711천원으로 한다.